

## ◎기상청공고 제2024-45호

「항공기상업무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3월 19일

기상청장

### 「항공기상업무 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개정 기상법(법률 제19225호, 2024. 2. 15. 시행)에 따른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, 항공기상특보의 발표기준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,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, 군 공항에 대한 항공기상관측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,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제공하는 군 공항의 확대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 기상법에 따른 인용조문, 용어 및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, 제20조, 별표 1, 별표 3 및 별표 5)
- 나. 군 공항에 대한 항공기상업무 정비(안 제10조 및 별표 2)
- 1) 군 공항이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범위를 명확히 함
  - 2)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제공하는 군 공항을 확대하고, 군 공항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
- 다.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(안 제10조의2 신설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(참조: 기상서비스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

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

- 전자우편: bluesm@korea.kr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(전화: 042-481-745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(<http://www.kma.go.kr>)의 「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」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